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관광발전지수 조사, 활용 등의 근거 마련 >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38호)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관광발전지수 조사, 활용 등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황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11. 12.

다. 회 부 일: 2025.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역 관광지별 관광 요소(교통·숙박·음식·안전 등)의 경쟁력에 대한 과학적 비교·분석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관광지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15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관광발전지수 조사, 활용 등의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지역관광발전지수의 개발·조사·작성 및 결과 발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5조(지역관광발전지수) ① 정부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의 관광 발전 지수(이하 “지역관광발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광발전지수가 공표된 경우 정부는 지역관광발전지수의 결과를 기본</u>

	<u>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조사 항목·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다. 검토사항

-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¹⁾.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정부가 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 여건의 조성,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1) 「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 관광객이 이용할 각종 시설과 제도 개선 등의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제8조),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및 공동체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관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정부가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를 지수화한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

도록 하고,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각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을 수립할 때에 지역관광발전지수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공급 능력, 관광소비 여건, 관광정책역량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음.

[현행 <지역관광발전지수 조사 사업> 개요]

- 사업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인 관광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격년 주기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결과 제공
- 지표체계: 지역의 관광공급 능력, 관광소비 여건, 관광정책역량을 포괄하는 복합지표 ([참고자료] 참조)
 - * 3개 대분류(관광수용력지수, 관광소비력지수, 관광정책역량지수), 6개 중분류, 18개 소분류, 33개 세부 지표
- 조사방법: 정부승인통계 자료조사, 지자체 현황조사, 국민 설문조사 분석
- 등급기준: 지표 활용, 총 6개 등급으로 구분
 - * 1등급 외부공개, 2~6등급 개별통보)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공신력 있는 지표개발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해서 개정안 부칙에서 6개월로 규정한 시행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
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물리적·사회적·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

지역관광발전지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분류 (3개)	중분류 (6개)	소분류 (18개)	세부지표 (33개)
관광 수용력 지수	관광자원	자연·문화자원	- 자연·문화자산 활용사업 수 - 국가유산 활용사업 수 - 박물관·미술관 수
		관광(단)지	- 관광(단)지 수 - 관광특구 수
		관광객 방문지	- 주요 관광지점 수 - 핫플레이스 수
		관광축제	- 지역축제 개최 현황
	관광 인프라	숙박	- 관광숙박업 객실 수 - 관광숙박업 객실이용률 - 일반숙박업 객실 수
		안내·정보	- 관광안내인력 활동일수 -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현황
		음식·쇼핑	-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 소셜미디어 맛집 언급량 - 관광쇼핑상품 현황 - 쇼핑상품 판매 점포 현황
		교통	- 광역교통 인프라 현황 - 관광교통 운영 현황
		안전	- 지역안전지수
관광 소비력 지수	관광객	관광객 수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관광만족도	- 관광만족도
		관광지출액	- 관광지출액
	관광산업	핵심 산업	- 관광사업체 비율 - 온라인 관광플랫폼(OTA) 지역관광 상품 수
		연관 산업	- 관광산업 특수분류 사업체 비율 - 고향사랑기부금액 - 관광벤처기업 현황
관광 정책 역량 지수	관광정책 환경	정책사업	- 관광자원개발사업 건수 -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건수
		관광예산	- 관광예산 비율
	인적자원 역량	공공역량	- 관광 공무원 비율
		민간역량	- 민간부문 관광인력 현황